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6. 16 선고 2022가합71168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203602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6. 16 선고 2022가합71168 판결

전문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순

피고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김승식

변론 종결 2023. 5. 12.

판결 선고 2023. 6. 16.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가. 원고 A에게 547,522,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8,953,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5.부터 2022. 3.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이 법원 E, F(중복), G(병합), H(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 C 주식회사가 가지는 배당금청구채권에 관하여 2022. 2. 22. 체결한 채권양도 계약을 766,475,466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C 주식회사에 이 법원 2022년 금제652호로 공탁된 566,485,981원 및 이 법원 2022년 금제653호로 공탁된 80,001,75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각각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공탁공무원)에 위 양도 취지의 통지를 하라.

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19,987,7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지위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아래에서 보듯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같은 목록 제○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아래에서 볼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대한민국으로부터 1,393,454,597원을 배당받을 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2) I과 원고 A은 피고 채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공동 운영하였는데, I이 피고 채무자 회사를 단독 운영하기로 하면서 2019. 11. 15. 피고 채무자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 A은 아래에서 보듯 I으로부터 일정한 정산금을 받기로 하였는데(실질은 주식양도계약으로 보인다), I이 실질적으로 1인 주주로 지배하던 피고 채무자 회사 역시 I과 함께 위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B은 아래에서 보듯 피고 채무자 회사에 돈을 대여한 사람이다.

4)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수익자 회사'라 한다)는 아래에서 보듯 피고 채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수한 회사이다.

나. 피고 채무자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각 채무 등

1) 피고 채무자 회사의 원고 B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가) 피고 채무자 회사는 2019. 2. 28. 원고 B으로부터 월 2%의 이자율로 35,000,000원을 차용하였다(이하 'B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 B은 위 채권을 담보하고자 같은 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5,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채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채무자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정산금 채무 등 가) 피고 채무자 회사는 2019. 11. 15.경 원고 A과의 사이에 I과 함께 원고 A에게 2019. 12. 30.까지 정산금 명목으로 860,000,000원을 지급하되 지체시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A 제1정산금'이라 한다) 및 2020. 1. 30.까지 투자경비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A 제2정산금'이라 한다)을 1개의 문서로써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A 제1정산금 채권을 담보하고자 2019. 11. 15. 이 사건 제1, 2, 3, 5, 6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채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경매 및 배당 경위

1) 이 법원은 ① 2019. 12. 17. 이 사건 제1, 3, 4, 5, 6, 7토지에 관하여(E,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은

2019. 12. 18., 배당요구 종기일은 2020. 3. 12., 이하 '경매 모사건'이라 한다), ② 2020. 4. 17. 이 사건 제1, 4토지에 관하여(F), ③ 2020. 11. 16.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은 2020. 11. 17., G), ④ 2021. 7. 21. 이 사건 제1, 2, 3, 5, 6토지에 관하여(H) 각각 부동산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다. 그중 ② F 사건은 경매 모사건과 중복 사건, ③ G 사건은 경매 모사건에 병합 사건, ④ H 사건은 경매 모사건과 중복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4계(이하 '이 사건 경매법원'이라 한다)에서 처리되었다(주문 제2항 가. 기재 부동산임의경매로,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 경매 모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2019. 12. 18. 무렵, 피고 채무자 회사는 피고 수익자 회사로부터 연 5%의 이자율로 1,200,000,000원 및 1,400,000,000원을 그 차용증서 작성일 당일 차용하고 이를 2021.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금전차용증서(을나 제9, 11호증, 이하 통틀어 '피고들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수익자 회사에 교부하였다. 피고들 차용증은 모두 작성일이 2019. 12. 18.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 수익자 회사도 2019. 12. 18. 이 사건 토지들 전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400,000,000원, 1,200,000,000원, 채무자를 각각 피고 채무자 회사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들은 2022. 2. 22. 피고 채무자 회사가 피고 수익자 회사에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채무자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이 사건 경매법원을 수취인으로 하는 통지서(이하 '이 사건 양도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양도통지서는 2022. 2. 23. 이 사건 경매법원에 도달하였다.

4) 이 사건 경매는 2022. 2. 24.를 배당기일로 하여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가) 원고 B은 이 사건 경매에서 B 대여금과 관련해 근저당권자 지위에서 35,000,000원(전액 원금)의 채권신고를 하였는데, 제2순위로 16,046,582원을 배당 받았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경매에서 A 제1정산금과 관련해 근저당권자 지위에서 1,123,654,794원(= 원금 860,000,000원 + 이자 263,654,794원)의 채권신고를 하였는데, 제5순위로 576,132,746원을 배당받았다.

다)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 채무자 회사는 채무자 겸 소유자 지위에서 제8순위로 잉여금

1,393,454,597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피고 수익자 회사에는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법원은 피고 채무자 회사에 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법원에 합계 646,487,734원(= 2022금652호 566,485,981원 + 2022금653호 80,001,753원)을 공탁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피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배당금 채권 외에 파주시에 약 300,000,000원 상당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부동산 중 일부는 매매예약 상태였고, 위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및 가압류 채권을 더하면 1,280,000,000원이 넘는 상태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 8,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9, 10, 11, 12, 13,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공탁계 및 보관금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파주시장, 파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피고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원고 A은 A 제1정산금 채권 중 남은 547,522,048원(= 채권신고 금액 1,123,654,794원 - 배당받은 금액 576,132,746원) 및 A 제2정산금 채권 200,000,000원의, 원고 B은 B 대여금 채권 중 남은 18,953,418원(= 채권신고 금액 35,000,000원 - 배당받은 금액 16,046,582원)의 금전채권이 있다.

가. 원고들의 피고 채무자 회사에 대한 청구원인

- 1) 원고 A은 피고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A 제1정산금 약정에 근거하여 547,522,0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한편, A 제2정산금 약정 관련하여, 원고 A은 이미 위 약정에 근거하여 피고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3. 1. 13.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21가단103672)].
- 2) 원고 B은 피고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B 대여금 약정에 근거하여 18,953,418원 및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 수익자 회사에 대한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합계 766,475,466원(= 남은 A 제1정산금 채권 547,522,048원 + A 제2정산금 채권 200,000,000원 + 남은 B 대여금 채권 18,953,418원)의 금전채권이 있다. 그리고 피고 채무자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로써 피고 수익자 회사에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① 피고 수익자 회사가 주장하는 피고 채무자 회사의 피고 수익자 회사에 대한 1,200,000,000원 및 1,400,000,000원 상당 기존 차용금 반환 채무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계약 또는 반사회질서의 계약으로 무효인 계약에 따른 채무이다. 즉, 피고 채무자 회사는 피고 수익자 회사에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설령 기존 차용금 반환 채무가 유효라 하더라도, ② 피고 채무자 회사는 채무초과로 경매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피고 수익자 회사에게만 양도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할 의사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1)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들은 피고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 합계 766,475,466원(= 남은 A 제1정산금 채권 547,522,048원 + A 제2정산금 채권 200,000,000원 + 남은 B 대여금 채권 18,953,418원) 범위에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2) 원상회복 청구 원고들은 피고 수익자 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다음 의무의 이행을 구한다.

가) 원물반환으로서, 합계 646,487,734원 상당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피고 채무자 회사에 양도하고 그 출급청구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가액배상으로서, 나머지 119,987,732원(= 취소 범위 766,475,466원 - 원물반환 범위 646,487,734원)을 원고들 중 1인인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채무자 회사에 대한 청구(약정에 근거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피고 채무자 회사 대한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피고 채무자 회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다.

1) 피고 채무자 회사는 원고 A에게 A 제1정산금 약정에 근거하여 남은 547,522,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5.(지급기일 다음 날 이후로서 이 사건 경매 배당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약정지연손해금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채무자 회사는 원고 B에게 B 대여금 약정에 근거하여 남은 18,953,418원 및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2022. 2. 25.(지급기일 다음 날 이후로서 이 사건 경매 배당기일 다음 날)부터 2022. 3.

10.(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상법이 정한 연 6%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율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비율)

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나. 피고 수익자 회사에 대한 청구(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채무자의 처분행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22. 2. 22. 이전에 피고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A 제1, 2정산금 채권, B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 그리고 피고 채무자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로써 피고 수익자 회사에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다.

나) 처분행위의 사해성 및 사해의사

(1) 차용금 채무관계 없이 채권양도를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피고들 차용증 작성으로써 체결한 1,200,000,000원 및 1,400,000,000원 상당 금전차용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것이라거나 반사회질서의 계약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금전채권자 중 1인에 채권양도를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채무자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전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 수익자 회사에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않고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칙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 수익자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 채무자 회사에 앞서 배당받을 권리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에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추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으로 다룰 수 있었음에도 배당기일 직전에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전적으로 양수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킬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로 봄이 타당하여,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소결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취소 범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후로서 이 사건 경매 배당기일인 2022. 2. 24. 기준으로 피고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 합계 766,475,466원(= 남은 A 제1정산금 채권 547,522,048원 + A 제2정산금 채권 200,000,000원 + 남은 B 대여금 채권 18,953,418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을 766,475,466원 범위에서 취소한다.

3) 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참조). 이때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집행공탁 한 경우, 그 공탁에 따라 채무변제의 효과가 생겨 제3채무자가 면책되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그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그러므로 그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변제공탁 또는 혼합공탁이 있는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배당기일 전 이 사건 양도통지서를 받은 이 사건 경매법원이 배당표상 피고 채무자 회사에 대한 배당금 1,393,454,597원 중 이 사건 공탁으로 합계 646,487,734원(= 2022금652호 566,485,981원 + 2022금653호 80,001,753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리고 646,487,734원은 앞서 본 취소 범위 금액인 766,475,466원보다 작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수익자는 피고 수익자 회사는 원물반환으로 위 각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배당금채권 금액 중 이 사건 공탁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수익자 회사는 가액배상으로 나머지 119,987,732원(= 취소 범위 766,475,466원 - 원물반환 범위 646,487,7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1) 피고 수익자 회사는 원물반환으로 피고 채무자 회사에 이 사건 공탁에 따른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출급청구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공탁공무원)에 위와 같이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수익자 회사는 가액배상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119,987,7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민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판사김도요

판사김해마루

판사조영민

별지

1) 주문 제2의 가항을 피고 D 주식회사에만 구하는 취지로 본다.